



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

2021. 11. 대검찰청

- 2021. 11. 25.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. 6. 9.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8조의2 제1항 중 ‘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’ 부분에 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. 【2019헌바446 사건 등】

-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(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, 제4항, 제5항)

□ 재심절차 안내

○ 재심청구권자(형사소송법 제424조)

-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
-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

○ 재심신청 방법

-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(형사소송법 제423조)
- 단,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규정(재소자에 대한 특칙)이 준용되므로,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(제420조 내지 440조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